

2016년 중소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

2016. 3. 17
한국디자인진흥원장

중소·중견기업에 디자인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채용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「2016년 중소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계획 및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분야

- 디자인 쏠분야(제품, 환경, 포장, 시각, 디지털, 서비스 등)

2. 지원내용(경력직 채용지원)

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
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(2016년 12월 31일까지)

- [지원인력]** 디자인분야 경력 2년 이상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디자인 인력
- [지원기간]** 근무시작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
- [지원규모]**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, 30개사 내외 지원
- [지원금액]**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금액지원

구분	책임급	선임급	주임급
요건	·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1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	·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	·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·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
정부지원금	310만원/월	240만원/월	170만원/월
기업부담금	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		
급여 총계 (법정복지비포함)	최저 400만원/월 이상	최저 300만원/월 이상	최저 250만원/월 이상

※ 디자인 인력에 대한 급여는 전액 정부지원금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되며, 30%이상 부담 권장

3.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

□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·중견기업 30개사 내외

- '중소기업'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
- '중견기업'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기업(단, 2014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)

4. 신청방법

□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

- **[신청기간]** 2016년 3월 21일(월) ~ 4월 8일(금), 17:00까지
- **[신청접수]** 이메일 접수(JOB@kidp.or.kr) 후, 관련 서류(기업신청서 7부, 회사소개서 3부) 우편제출(마감일 도착분까지)

※ 반드시 첨부서류(하단 1번~5번)를 이메일로 우선 제출 후, 기업신청서(7부), 회사소개서(3부)만 별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우편접수처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(야탑동 344-1) 한국디자인진흥원 6층 604호 기업지원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앞

※ 공고문/관련서식 : www.kidp.or.kr - 주요사업 - 지원사업 -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카테고리

- **[첨부서류]** 첨부 양식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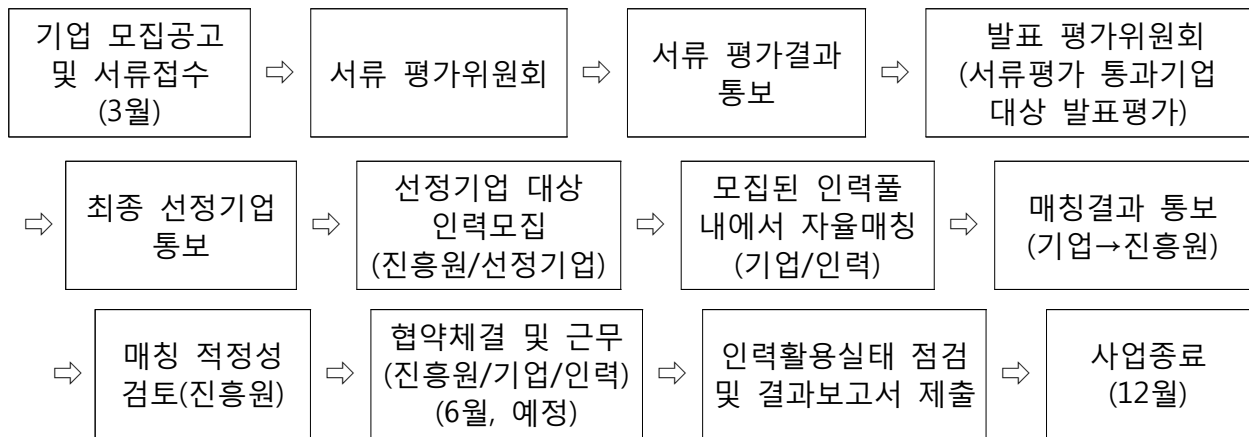
번호	제출서류	구분	비고
1	기업신청서	필수	서식1) 첨부 참조(한글파일)
2	기업현황서	필수	서식2) 첨부 참조(엑셀파일)
3	재무제표증명원	필수	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(13년~15년) - 15년 미결산시에는 가결산 자료로 대체 -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-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, 창업이후 재무제표만 제출
4	회사소개서	필수	기업소개 팸플렛, 유인물 등 회사소개 자료
5	기업인증서	해당시	글로벌생활명품기업 선정증, 이노비즈 인증서, 벤처기업 확인서, 기타 인증·수상 확인서 등

5. 신청제외 기업

-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
 -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 - 既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
 -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

6. 선정절차 및 평가

□ 추진절차



※ 사업일정을 고려 변동가능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평가방법) 디자이너 활용, 채용, 디자인 경영계획, 업무환경, 혁신가능성 등 서류·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기업 순위를 결정(필요시 현장평가 진행) ○ (주요 평가기준) 디자인-기술융합, 자체 디자인·브랜드 양성, 글로벌 시장 공략, 시장선도 등 유형별 디자인 활용의 시급성과 발전가능성, 지원인력의 계속고용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
--------------	--

※ 既 지원기업 중 성과우수기업, 기술혁신형·소비재형·수출유망형 기업 우대

※ 선임급(경력 7년) 이상 전문인력 수요기업 우대

7. 기타사항

-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, 별도 모집된 인력과의 자율매칭을 통해 최종 지원 기업·인력 확정
- 지원대상 기업에서 조기에 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,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 일시지급(단, 별도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)
-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원인력이 기업지원 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(지식재산권 등) 등은 지원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. 단,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디자인너(지원인력) 실명 명기 권고
- 지원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제고를 위한 경영자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(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정)
-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, 목적 외 인력 활용 등 지원사업 의무사항 미이행·악용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

8. 사업 문의

- **(문의처)**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·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
 - 전화 : 031-780-2128 / 이메일 : JOB@kidp.or.kr
 - 홈페이지 : <http://www.kidp.or.kr>
 - 주소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(야탑동 344-1) 한국디자인진흥원 6층 604호 기업지원팀